

# 서 면 답 변 서

질의의원	이수현 의원	소 속	평창군의회
답변과	환경복지과	일자	질의: 1999년 12월 8일 답변: 1999년 12월 9일
회의	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결특위		

## 【질의요지】

- 읍·면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(점자블럭, 화장실 등) 설치기준은,

## 【답변요지】

- 읍·면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설치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.
- 법령시행에 따른 행정사항(법률 제5332호 97.4.10공포)
  - 시군, 읍·면·동사무도등 공공기간의 건물은 2000년 4월까지 차질없이 편의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도록 되어 있으며,
  - 2000년 기준연도로 하여 5년마다 시도별 자체편의시설 설치 계획시행
  -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적으로 읍·면동사무소, 우체국, 보건소, 정부청사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 2000년 당초예산이 60,000천원을 확보하여 편의시설인 점자블럭, 화장실개축, 계단낮추기, 도움벨등을 설치 장애인들에 대해 편의를 제공코자 할 계획입니다.

※ 편의시설 미설치시 3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부과 대상이 됩니다.

- 평창군 장애인현황
  - 등록장애인수 : 875명(지체605, 시각60, 청각언어109, 정신지체101)